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및 하천공사 비용 국고 부담〉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34호)

2026. 9.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및 하천공사 비용 국고 부담	2
※ 참고자료	
1.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현황	12
2.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	12
3. 재정분권 추진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전환사업 개요	13
4.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 현황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3.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정비 완료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 대비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국가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해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하천정비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관리에 있

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및 하천공사 비용 국고 부담

개정안은 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는 지방하천과 ②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 지류·지천 등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마지막으로,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9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⑧ (생략) <u><신설></u>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하천</u> <u>2.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 지류·지천 등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하천</u> <u>⑩ 제9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u>
<u><신설></u>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③ ~ ⑧ (생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

하여는 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국가지원 지방하천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또는 제28조제1항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 ⑪ (생략)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 ----- -----. ⑤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 -----.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 -----.
--	--

현행법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음.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함.¹⁾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며,²⁾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함.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제방, 저수로, 보 등)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³⁾ 필요한 경

-
- 1)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이하 생략)
- 2)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우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음.⁴⁾

하천에 관한 비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며,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드

- 3)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하 생략)
- 4)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5)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한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 국가하천의 경우 제방정비 완료율이 75.4%인데, 지방하천은 48.1%에 그치고 있음. 하천기본계획 수립률도 국가하천(99.8%)에 비해 지방하천(95.7%)이 저조하여, 지방하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국가하천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참고자료). 그 결과 수해 발생에 따른 피해는 지방하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수해 발생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재난명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설수	피해액	시설수	피해액
2018	합계	5	684	258	13,568
	6.26~7.4 호우, 제7호 태풍	-	-	11	452
	8.26~9.1 호우	5	684	155	8,820
	제19호 태풍 솔릭	-	-	5	187
	제25호 태풍 콩레이	-	-	87	4,109
2019	합 계	4	215	232	24,679
	제18호 태풍 미탁	4	215	232	24,679
2020	합 계	153	48,916	1,276	147,274
	7.28~8.11 호우	148	48,723	1,011	128,622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5	193	265	18,652
2021	합 계	-	-	209	14,673
	7.5~7.8 집중호우	-	-	98	7,314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	-	111	7,359
2022	합 계	25	3,234	543	131,252
	8.8~8.17 집중호우	23	2,970	427	58,803
	제11호 태풍 힌남노	2	264	116	72,449

6) 「하천법」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연도	재난명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설수	피해액	시설수	피해액
2023	합 계	42	17,560	735	162,669
	6.27~7.27 호우	42	17,560	616	147,082
	제6호 태풍 카눈	-	-	119	15,587
2024	합 계	10	6,088	581	68,142
	7.8~7.19 호우	9	6,084	452	61,713
	9.19~9.21 호우	1	4	129	6,429
2025	합 계	83	10,868	1,001	220,873
	7.16~7.20 호우	78	10,676	939	219,162
	8.3~8.14 호우	5	192	62	1,711
계		244	76,889	3,896	563,968

자료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이와 관련하여, 원래 국고보조로 추진되었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⁷⁾⁸⁾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하천재해 발생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하천은 특정 행정단위가 아니라 유역단위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

7)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국고보조사업) 일부가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되었으며,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었음. 1단계(2020년)에서는 13개 부처의 39개 세부사업(3.6조원 규모)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2단계(2022~2023년)에서는 12개 부처의 41개 세부사업(2.3조원 규모)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1단계에서 이양되었음. 지방이양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부르기도 함.(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2023.6.16.)

8) 이에 따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 업
171. 지방하천 정비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재배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⁹⁾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국가재정의 지원이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국고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21대국회에서도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¹⁰⁾되었으며, 국회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하천공사 시행 및 하천공사 비용의 국고 부담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국고 부담의 타당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및 하천공사 비용의 국고 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우리 위

9)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2023.6.16., pp.71~76

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113979,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117345,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117699,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등 3건

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방어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정비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21대국회에서의 논의과정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검토** 입장임.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28일 기준 총 576개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 지정·고시¹²⁾되어 있음.

기획예산처는 2020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재원과 함께 이양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지방이양된 사업의 국가 환원은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라는 재정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7

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205593,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210969,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211776,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등 3건

1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93호)

※ 참고자료

1.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현황

구 분	하천 제방정비 현황						
	합계 (km)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km)	(%)	(km)	(%)	(km)	(%)
합 계	37,105	19,004	51.2	10,650	28.7	7,451	20.1
국 가	4,251	3,205	75.4	753	17.7	293	6.9
지 방	32,854	15,799	48.1	9,897	30.1	7,158	21.8

자료 : 한국하천일람(2024. 12. 31. 기준)

2.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

구 분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				
	전체		수립		
	하천수(개)	연장(km)	하천수(개)	연장(km)	수립율(%)
합 계	3,841	29,394	3,787	28,296	96.3
국 가	81	3,794	81	3,787	99.8
지 방	3,760	25,600	3,706	24,509	95.7

자료 : 한국하천일람(2024. 12. 31. 기준)

3. 재정분권 추진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전환사업 개요

□ 전환사업 개요

- 1단계('20년) 및 2단계('22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단계 전환사업(총 39개)에 포함

- 균특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

-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양 사업의 '19년 국비규모(약 3.56조원)만큼 한시적으로 보전(~'26년)

□ 재원보전 기준

- (배분기준)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수행 적정성, 집행실적, 광역-기초 분담비율 등을 평가하여 자치단체별 보전규모를 일부 조정

* '19년 국비규모인 3.56조원(고정)을 매년 지자체별 배분

- (지급방법) 전환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단체별 보전규모 사전통지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계정을 통해 보전금 지급

* (성과평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행안부에서 보전금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평가 후 다음연도 전환사업 재원보전 규모에 반영

- (예산편성) 기존 국비 보조비율(50%) 유지, 사업 종료시 기존 세부 사업 내 신규사업 편성 원칙

- 재원보전 비용은 국비보조 방식이 아닌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는 개념으로 전환사업은 모두 지방비로만 구성

- (집행원칙) 전환사업 보전 목적에 반하는 재정지출 금지

4.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 현황

□ 지방하천 이양 추진경과

- **(이양경과)**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1.14조 원)’ 포함 **3.56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20년)
-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율 인상(10%p, 8.5조원 규모)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 ※ 국가-지방 전환사업은 총 39개 사업, 3.56조원 규모로 지방세법 및 지방기금법을 통해 3.56조원은 반드시 전환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 (다만 사업간 배분은 자율적 변경 가능)

지방이양 전 ('19)		지방이양 후 ('20)	
균형발전특별회계 (‘19년 총 10.7조원)	전환사업 3.5조	지방소비세 확충분 (‘20년 8.5조원)	전환사업 3.56조원 보전
일반회계 등	전환사업 0.06조	※ 추가 확충분은 지역별 가중치 등 적용하여 배분	

※ 안정적 전환사업 지원을 위해 '19년 국비규모(약 3.56조원)만큼 한시적 보전(~'26)

□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현황

- **(예산)** 지방이양 이전('19, 1.06조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관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통해 성과관리 시행 중('20~, 행안부)
 - ※ 예산의 적정편성·집행 등을 평가하고 미흡 등급 지자체의 일정 금액 감액 및 재배분, '24년부터 지방하천정비 등 6개 사업을 우선투자사업으로 별도 평가(편성기준액 미달시 감액)
- **(정비율)** 지방하천정비를 지속 추진중이나 정비율은 이양 이전과 비슷한 수준*

* ('18년) 48.1% → ('20년) 47.24% → ('22년) 49.2% → ('23년) 48.8% → ('24년) 48.1%

※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정비대상 증가,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지방하천 변동 등 영향